
가족 돌봄 청년 (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2022. 2. 14.

관계부처 합동

순 서

I. 검토 배경	1
II. 가족 돌봄 청년 현황 및 문제점	2
1. 가족 돌봄 청년 : 중첩적 어려움	2
2.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정책 한계	4
III. 가족 돌봄 청년 정책 추진 경과	6
IV. 가족 돌봄 청년 정책 추진 방향	7
V. 가족 돌봄 청년 정책 추진 계획	8
1. [정의] 가족돌봄청년 제도적 정의 마련	8
2. [발굴·조사] 가족돌봄청년 규모 및 실태 파악	9
3. [지원①] 가족돌봄청년 대상 기존 제도 지원·연계	12
4. [지원②] 가족돌봄청년 위한 신규 제도 발굴	13
5. [관리] 가족돌봄청년 연계 관리	15
6. [제도화] 가족돌봄청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16
7. [인식] 가족돌봄청년 관련 사회적 인식 확산	17
VI. 향후 일정	19

□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증가

○ (가족돌봄청년 문제)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인식 증가*

*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 보도 등 가족돌봄청년 관련 언론보도 및 문제 지속 제기 (22세 청년 딸 간병 중 생활고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살해 혐의 징역 4년 선고")

** 영 케어러(Young Carer)를 해외에서는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 등을 돌보는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까지 포괄(호주, 일본 지자체)

" 돌봄으로 인한 빈곤 악순환 "	" 간병 부담으로 인한 비극 "	"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낮은 인식 "
 <p>부양 부담 떠안는 청년들.. 빈곤층 전락 악순환</p>	<p>간병 살인이 드러낸 '영 케어러'의 고통, 국가는 어디 있었나</p> <p>간병인으로 일하며 아버지를 돌보는 청년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알츠하이머로 시달려오던 아버지를 돌보는 청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했다. 그 속에서 온·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했다. 그 속에서 온·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했다. 그 속에서 온·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했다.</p>	<p>영 케어러를 아시나요?</p> <p>"부모나 조부모를 홀로 부양하는 청년들이 있다. 외국에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양 부담을 떠맡게 된 이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한다."</p> <p>SBS NEWS 제1회 디지털 최초공개 8월 20일 저녁 8시 50분 뉴스트리</p>

□ 청년 개인의 책임인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인가

○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서도 논의 필요

* 과거 아동·노인 돌봄이 가족 테두리 내 개인 책임이었으나, '포용국가 아동정책', '치매국가책임제',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가족 부양·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추세

< 대상의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의 예 >

	 <p>치매 노인 돌봄 한가운데 돌보던 딸 혹은 며느리</p>	<p>70% 2002</p> <p>26% 2018</p>
<p>아동의 장시간 노동 당면시 → 아동보호 및 권리 신장</p>	<p>어르신 병 수발은 딸, 며느리 등의 몫 → 치매국가책임제</p>	<p>가족부양책임 약화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p>

⇒ 가족 돌봄 청년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어려움을 나누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

1 가족 돌봄 청년 : 중첩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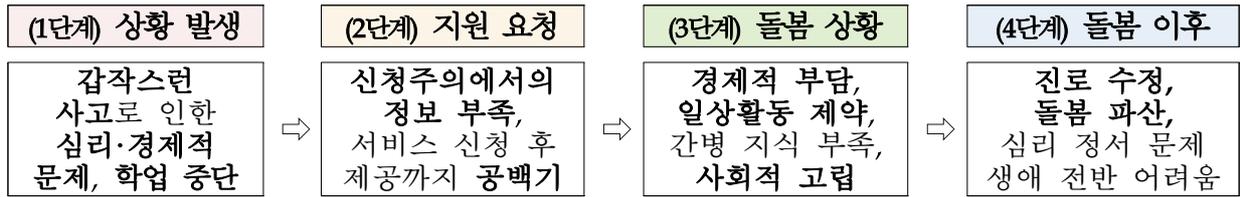
< 가족 돌봄 청년의 현재와 미래의 어려움 >



- (“영” 케어러 특수성)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돌봄을 맡느냐에 따라 돌봄의 부담 다르며, 어린 시절 돌봄 부담은 현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

“50대 이상 간병인은 대부분 커리어, 가족관계, 인생의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돌봄을 맡는다...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교·업무에서 성과를 요구받는 사람이 느끼는 4시간과, 은퇴하고 주로 집에서 보내는 사람의 4시간은 다르다. (“영 케어러”, 시부야 도모코, 2021)”

< 가족 돌봄 청년의 단계별 직면 문제 >



- (돌봄 자체의 어려움) 어린 나이에 닦친 돌봄 부담은 타 연령대의 돌봄 부담보다 크며 이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연결
 - (행정 부담) 갑자기 돌봄 시작되어 각종 병원·복지 행정, 간병·치료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 부재*로 지원정책 접근 부족
 - * ‘치매’에 대한 인지 부족·오해로 잘못된 대처·행동, 조현병 등 가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지·정보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 및 상황 악화된 경우
 - (돌봄 부담) 집안일(요리·청소·빨래 등), 일상생활 수발(식사 보조 등), 의료 관련 수발(약 복용 관리, 가래 제거 등), 감정 지원(돌봄 대상자 기분 격해지는 경우 가라 앉히기 등), 신체 돌봄(목욕 보조, 용변 보조 등)
 - * 돌봄대상자 바로 옆에서 밀착 케어를 해야하는 상황이 많으며, 동 연령대의 청(소)년의 일반적인 생활과 비교 시에 가족 돌봄 청년들은 많은 책임과 노동 감당

< 복지부 주관 가족 돌봄 청년 간담회 중('21.9.23.) >

“할머니는 집에 불을 내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 곳곳에 두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어요. 매일 할머니가 벌인 일들을 처리하느라 지쳐서 학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고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우울감까지 깊어졌어요”

< 영국·일본 조사를 통한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주 내용 >

아동이 하는 돌봄 내용	영국('95)	영국('97)	영국('03)	일본(미나미우 오누마市)	일본(후지사와市)
집안일 (요리, 청소, 빨래 등)	65%	72%	68%	53.8%	54.1%
일반적인 돌봄 (약 복용 관리, 옷 갈아입기, 이동 보조 등)	61%	57%	48%	-	-
정신적인 부분 지원	25%	43%	82%	16.9%	13.2%
신체 돌봄(목욕과 용변 보조 등)	23%	21%	18%	6.2%	2.6%
형제 돌보기	11%	7%	11%	47.7%	52.8%

- (고립감 심화) 가족 돌봄 청년은 또래와 고민을 나누기도 어렵고, 돌봄 관련한 상담 나눌 상대 부재하여 고립감 및 우울감 심화

* 청소년기 경험 부족으로 정보탐색능력도 제한적이거나, 이를 일대일로 상담해 줄 어른 부재하고, 이전 세대와 달리 돌봄을 분담할 형제자매 수도 적은 편

< 가족 돌봄 청년의 고립감 심화 관련 인터뷰(영 케어러", 시부야, 2021) >

“또래와 일상적 이야기를 할 때 데이케어, 치매, 기저귀,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평소 TV 볼 시간 없는 와중에 연예인의 화젯거리를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알아보지 않으면 간단한 대화에도 끼어들 수 없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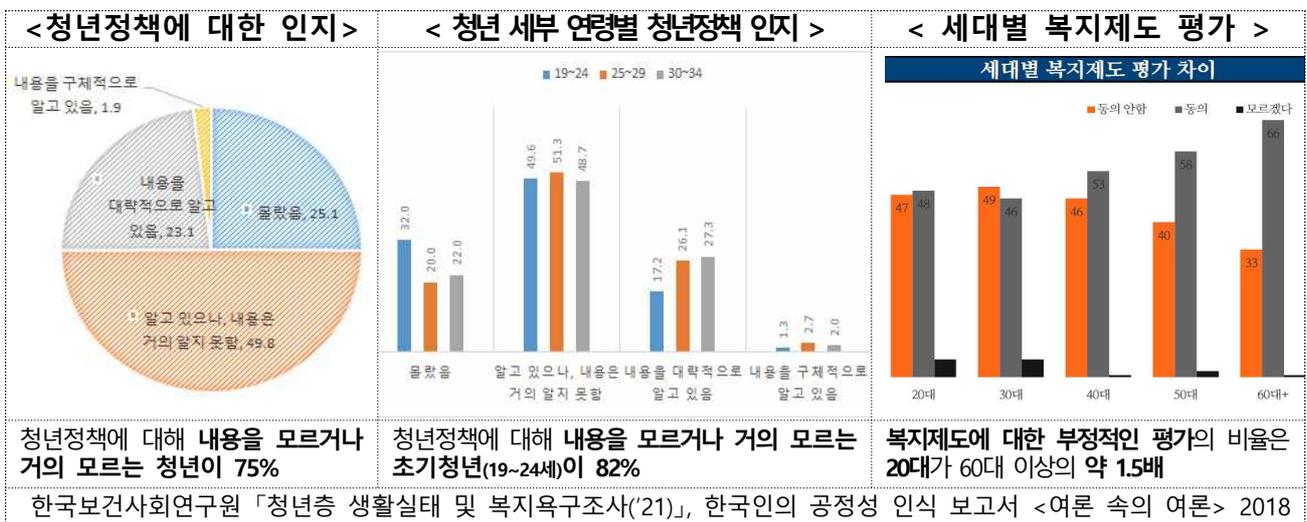
- (생계 부담) 소득 창출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이 돌봄 과정에서 생계비·가사비 마련 어려움 및 장기적 돌봄으로 인한 “돌봄 파산”
- (미래 투자 부족) 돌봄·생계에 대부분 시간·노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미래 준비 부족하고 이는 생애 전반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
 - (학업 병행 곤란) 돌봄과 당장의 생계활동으로 진로·학업 병행이 어렵고, 경력 등을 쌓지 못해, 돌봄 이후 미래에 대한 투자 부족
 - (빈곤의 악순환) 현재 빈곤 → 당장 생계비 마련을 위한 취약한 일자리 → 미래를 위한 투자 불가능 → 생애 전반의 취약 가능성

< 가족 돌봄 청년의 빈곤 악순환 관련 인터뷰(“준비안된 바통터치”, SBS, '21.8.29.) >

“부양을 하느라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돈을 준다거나, 그 시기가 지난 뒤에 무슨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손해를 만회할 수가 없어요.”

2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정책 한계

- (복지 제도 접근성 미흡) 정보 부재 혹은 부정적 수급 경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
 - (청년정책 인지) 청년 75%(19~24세 초기청년 경우 82%)가 청년정책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책정보 인식도 미흡
 - (높은 문턱) 지원 제공자의 “무성의” 또는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복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각인되어 복지 제도 기피 요인으로 작용



- (제도적 기반 부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의·조사 등을 위한 제도 부재로 대상 설정, 지원 방안 마련 등에서의 어려움
 - (카테고리 부재) 기존 복지대상자와 달리 정의가 없어서 지자체에서도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어디로 연계할지 모르는 경우 존재
 - *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라는 개념 자체가 지자체 공무원에게도 생소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신의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노력 필요, 설명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다수
 - (법적 체계 미흡) 기존 법적 체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호하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에 한계
 - (실태 조사 부재) 국내 가족 돌봄 청년의 규모·욕구 등 파악 부족
 - * (규모 파악) 지원 계획 확립 및 사업 설계, 예산 등을 위한 선제적 규모 파악 필요
 - ** (실태·욕구 파악) 가족 돌봄 청년의 현 상태에 대한 파악이 이뤄져야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며,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 가능

< 참고① : 복지제도를 모르던 가족 돌봄 청년 : 드라마, “나의 아저씨” >



- 낮에는 비정규직으로 건설회사에 근무, 밤에는 아르바이트, 부모님이 남긴 사채와 할머니의 부양을 감당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지안과 같은 부서 박동훈 부장이 나눈 대화

동훈 :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지안 :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동훈 :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서 쫓겨나?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 (전달 체계 미흡) 가족 돌봄 청년 전담 발굴·지원·관리 체계 미흡

- (발굴체계) 병원·학교 등의 초기 창구 역할이 미흡하며 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경제적 취약계층 발굴 위주
- (지원체계) ①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정보제공, 상담, 집안일 도움 등) 미흡, ②가족돌봄청년 미래 투자 지원(가족돌봄청년의 시간 확보 등) 부족

< 참고② :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초기 창구로서의 학교의 역할 >

< 가족 돌봄 청년 대책 발표 시 일본 문부과학 부대신 “니와 히데키” 발언(21.5.17.) >

“모든 학생이 가정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학교 생활을 보내고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고, 가족 돌봄 청년의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일정 숫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문부과학성도 지원이 필요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해 학교 교직원에게 연계, 복지 지원하겠다”

⇒ (초기 창구 : 학교) 가족돌봄청소년에게 학교는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으로, 학교에서의 가족 돌봄 청년 발굴 및 인식 제고 중요

- * (영국) 영국도 처음 영 케어러 조사를 한 곳은 교육 관련 부서(‘88년 샌드웰시는 25개 중학교 교직원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총 1만6천명 가운데 영 케어러 95명 발견)
- * (일본) ‘15년 미나미우오누마市와 ‘16년 후지사사와市에서 공립 초등학교·중학교·특별지원학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 참고③ :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초기 창구로서의 병원의 역할 >

< 2013년 일본 의료사회복지사 단체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설문 조사 >

설문 조사에 응답한 402명 가운데 실제로 18세 이하 아동이 가족을 돌본다고 느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35.3%에 해당하는 142명이 ‘있다’고 답

⇒ (초기 창구 : 병원) 가족돌봄청년 발굴 역할은 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전문가에게도 필요

가족 돌봄 청년 정책 추진 경과

- (복지부, 가족돌봄청년 간담회) 복지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통해 가족 돌봄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향 논의('21.9.23., '22.1.19.)

< 가족 돌봄 청년 대책 마련을 위한 가족 돌봄 청년과의 간담회 주요결과 >

- (일시·장소) '21.9.23.(목) 16:00 ~ 18:00, '22.1.19.(수) 14:00 ~ 16:00, 서울 달개비
- (1차 간담회 논의 사항) 아동·청(소)년기에 겪는 돌봄 문제

- 돌봄이 시작된 사유·배경
- 돌봄으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경험(학업·진로·일 병행의 어려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 가족·친지·친구·학교 등 주변의 도움을 (못)받은 경험
- 공식적인 제도적 지원을 (못)받은 경험과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등

- (2차 간담회 논의 사항)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대한 의견수렴(생계·돌봄·행정부담)

-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생계지원(일시·긴급 지원책) 필요성
- 장기요양보험·보호센터·간병인 서비스 이용 등 돌봄 애로사항
- 복지신청·병원행정업무 등 행정업무처리에 대한 행정처리 지원 필요성
- 복지제도 정보 접근성을 위한 전담 창구 마련 등

- (보사연, 가족돌봄청년 포커스 그룹 인터뷰(10.27., 11.5.)) 가족돌봄 청년 정책 제도화, 적극 발굴, 시간·비용 지원 필요성 등 제시

- (복지부 보사연,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11.11.)) 중앙정부 차원 전달체계 구축 필요, 정책 관심이 돌봄대상자에 집중되어 돌봄자에 대한 낮은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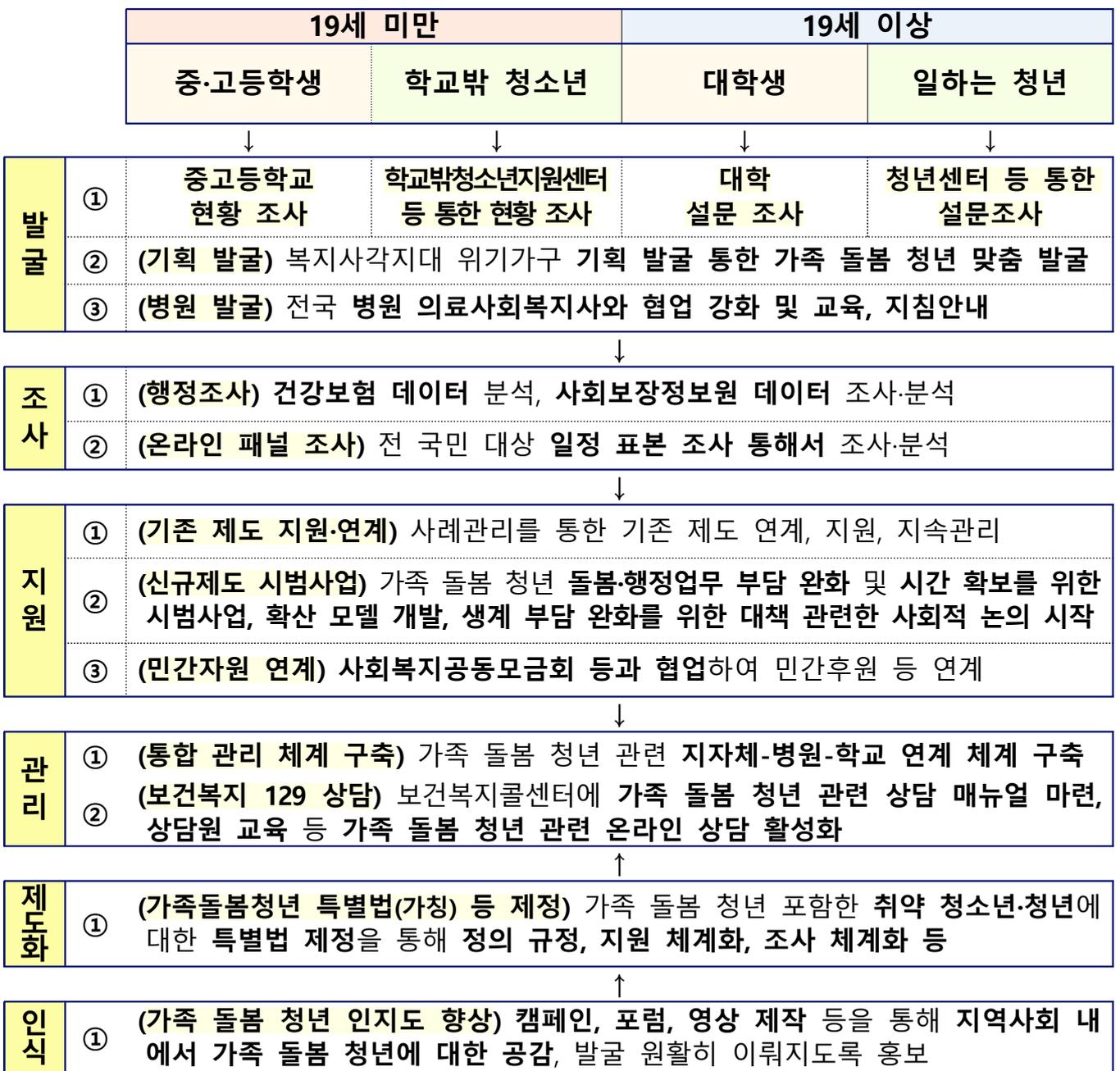
* 사례관리팀 확인 결과 가족 돌봄 청년 발굴지원은 한 건도 없었으며, 이는 사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지대상자로서의 공식 카테고리(개념, 정의) 부재로 추측

- (발굴 제안) 학교 역할 강화(학교에서 취약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연계 가능한 시스템 구비), 기초 보장 신청 탈락자 리스트 접근 등

가족 돌봄 청년 정책 추진 방향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현재의 안전망) 가족을 돌보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가족 돌봄 청년의 현재를 위한 안전망’ 구축
- (미래 향한 도약대) 가족을 돌보는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가족 돌봄 청년의 미래를 위한 도약대’ 조성



1 [정의] 가족 돌봄 청년 제도적 정의 마련

◇ 해외사례 연구, 우리나라 연관 제도 검토,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 마련

①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정의)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정의를 마련하여 조사·특례·지원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

* 법적체계 내에서 일정 정의·자격·기준 마련 등의 제도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특례 및 전담 지원이 가능

<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정의 검토 >

- (연령) 만 34세 이하 대상으로 조사하되, 청소년 및 초기 청년(24세 미만)에 집중

○ (해외 사례) 해외의 경우 대체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일부 (호주, 일본 지자체)는 20대까지 포괄

○ (보사연 검토) 우리나라는 대체로 20대와 30대초반까지의 청년 연령에 해당, 성인 이행 어려움과 안정적인 자립 지장 측면에서 아동과 청년을 포괄할 필요

- 특히 장기간 돌봄에 따른 독립적 생활(자산마련, 결혼 등) 기반 구축의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성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범주 설정* 필요

* 가족 돌봄 청년 발굴 사례자 중 20대 후반의 대상자 다수 존재하므로 청소년·청년을 포괄하는 연령 상한 설정 필요(청년기본법에 근거 34세까지 확대 고려)

- (대상) 제공하는 돌봄의 내용 및 형태에 대한 기준 설정

○ (질환) 급성기가 아닌 만성·장기 질환, 영구 손상(장애)의 경우를 대상자로 한정

○ (돌봄 내용) 일상생활의 제약 수준(ADL, IADL)과 지속성 등을 토대로 판단

○ (돌봄 형태) 돌봄의 대상은 가족(민법상 가족 범위 등 고려)으로 한정*

* 노인장기요양법 등에서 돌봄에 대한 의무를 가족에 한정하는 점 고려

※ 대상 조건 및 연령에 대한 정의는 조사·전문가 논의 등을 통한 추가 검토 필요

▪ (가족 돌봄 청년 명칭) 현재 통용되고 있는 '영 케어러' 용어를 대체하면서도 정의에 부합하는 국어 명칭에 대해 논의

* (국립국어원 의견(21.1.6.))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비용' 등 '가족돌봄○○'이 쓰이고 있는 현실 고려 시 '영 케어러'는 '가족 돌봄 청년' 혹은 '돌봄 청년'으로 명명 가능

2 [발굴 및 조사] 가족 돌봄 청년 전국 규모 및 실태 파악

◇ 즉각 지원을 위해서 가족돌봄청년 대상 현황조사 통한 발굴, 이에 더해 행정 조사 등을 통해 규모·실태 등 파악

① (현황조사) 전국 가족돌봄청년 통계를 확보하고 즉각 지원 가능한 가족돌봄청년 가구 대상으로 지원·연계하기 위한 **발굴조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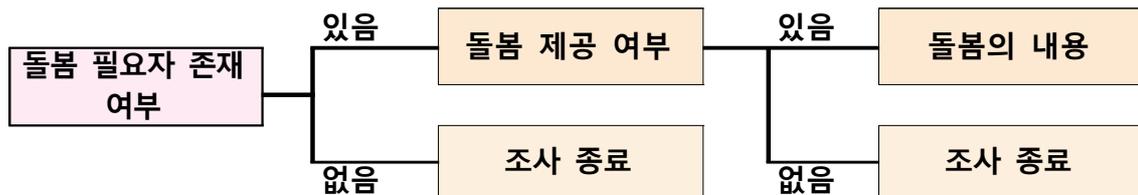
※ (19세 미만) 중·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한 조사

(19세~34세) 대학 및 청년 관련기관(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통해서 조사

19세 미만		19세 이상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
↓	↓	↓	↓
중·고등학교 현황 조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통한 현황 조사	대학 설문 조사	청년센터 등 통한 설문조사

< 가족 돌봄 청년 현황조사 설문 내용(안) >

- (주요 내용) 돌봄의 내용, 돌봄 시간,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가족 돌봄 청년 욕구파악), 필요 제도개선사항, 가족 돌봄 청년 생활 애로사항(일반 청년과 성과차이) 등
- (설문 진행방식) 돌봄 필요 가구원 여부 → 돌봄 제공 여부 → 돌봄 내용·어려움·애로사항 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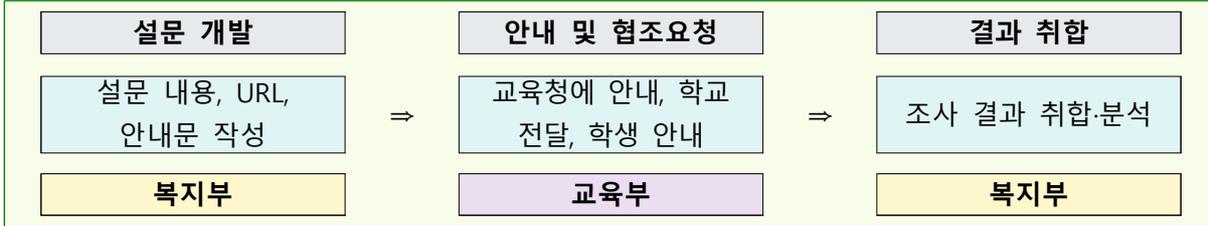


※ 조사 대상층에 따라 조사 문항에 대한 이해도 및 응답률 높이기 위한 검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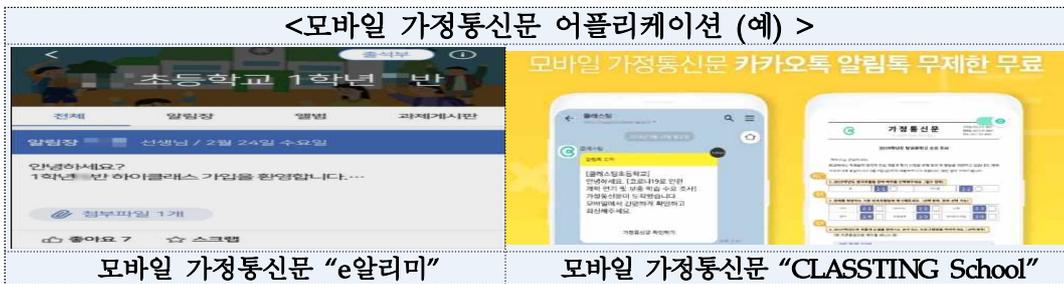
- (중·고등학생) 각 학교에 설문지 URL 배포, 설문 참여 독려 통해 가족돌봄청년 초기 진입 시기에 놓일 수 있는 중·고생 대상 조사
- (학교밖청소년) 관련 시설·기관(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 등록된 청소년에게 설문지 URL 발송(문자)
- (대학생) 각 대학에 설문지 URL 배포 및 대학 공지·안내 관련 사이트, APP, 방송 등을 통한 설문 참여 독려
- (일하는청년) 그 외 청년들에 대해서는 청년 관련기관(온·오프라인 청년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통한 설문지 URL 안내·배포

< 중·고등학생 가족 돌봄 청년 조사 및 지원·연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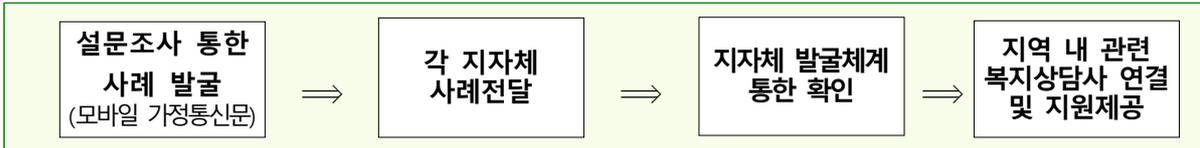
- (조사내용) 만성·장기 신체·정신상의 질병이나 장애,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중·고등학생 가족 돌봄 청년 조사 ('22년 3월~)
- (조사진행) 설문 개발, 설문 안내 및 결과 취합 등 조사 진행 단계별 부처 역할 수행



- (조사방법) 모바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각 학교별 안내·설문 진행



- (지원·연계) 조사 통해 발굴된 사례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 확인 후 필요 지원 제공 및 연계



② (기획발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활용하여 저소득층 등 취약 가구 중에서 가족돌봄청년 가구 특별 기획 발굴 실시

< 위기가구 기획발굴 가족 돌봄 청년 발굴 프로세스(안) >

※ (발굴 프로세스(안)) ①세대정보(한부모,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복지수급 등 위기정보 토대로 대상자 선별 → ②선별된 대상자 인적정보(연령) 등 활용하여 가족 돌봄 청년 추정 사례 선별 → ③선별된 가구에 대한 우편·유선 확인 및 각 지자체 발굴체계 등을 통한 확인 후 발굴·지원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 (발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정의 기준으로 하여 관련 지표 통한 규모 추정
 - (연령) 13~34세 이하 가구원 포함 가구
 - (세대정보) 한부모,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 (복지수급) 긴급복지, 기초·긴급신청탈락
 - (기타) 의료비과다지출 등

③ (병원발굴) 의료사회복지사에 대한 가족돌봄청년 관련 교육 진행, 리플렛 배포 등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 발굴·연계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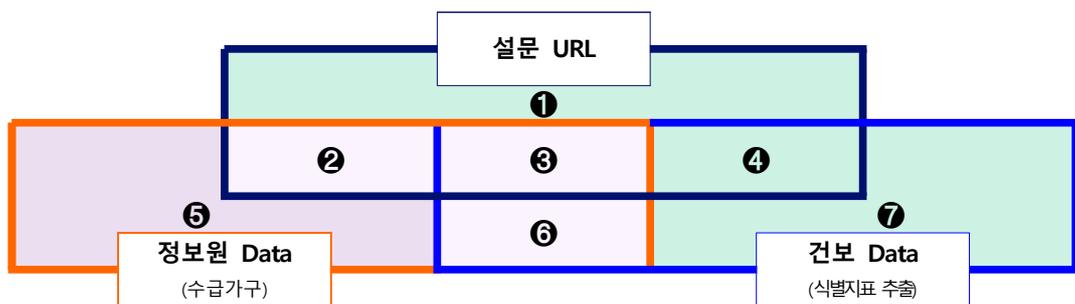
< 참고 :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한 병원 등의 역할(안) >

- 가족 돌봄 청년 발굴·지원·관리 위한 병원 내 인식 제고 및 복지 안내 방안 마련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연계하여 의료사회복지사 및 병원 대상 가족 돌봄 청년 관련 교육·홍보 및 사례 공유 워크숍 등 진행
 - 의료사회복지사를 두는 것이 의무가 아닌(의료법 제38조) 소규모 병원에서도 퇴원 시 복지 안내 리플렛 등을 배포하도록 지원

④ (행정조사) 건보데이터(중증 질환 가구, 재난적 의료비 가구) 분석, 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의료급여 수급 가구 등) 분석

시스템	주요 내용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1종 수급가구(근로무능력) + 청년이 포함된 가구 ○ 의료급여 2종 수급가구 + 청년 포함 가구 + 고정적 의료비 지출 가구
건강보험 행정데이터	<p>① 건강보험 의료 명세서 중 장기·만성 질환 진료내역, 요양일수 장기간 여부, 종합장애등급 코드를 토대로 돌봄 대상자 선별</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② 선별된 돌봄 대상자의 가구데이터를 활용, 구성원 중 13~34세 청소년과 청년이 있는 경우 산출</p> <p style="text-align: center;">↓</p> <p>③ 해당가구의 가구정보 및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가구소득, 장애여부, 거주지역)과 건강상태(의료명세서, 검진자료 활용), 취업상태(사업장업종) 파악</p> <p><small>* 개별 식별코드로 분석 진행 시 동명이인 데이터 삭제 등의 이유로 전체 데이터의 약 7~10% 소실 가능성</small></p>

< 참고 : 현황조사 및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 데이터 연계·활용(안) >



※ 각 조사 Data를 연계하여 지자체 현장방문 확인 대상자 및 지원 대상자 추출

대상 집단별 지원연계(안)

- ①, ④, ⑦: 지자체 확인 대상자, 기존 제도 지원·연계, 가족돌봄청년 특례 지원 제공
- ②, ③, ⑥: 지자체 확인 대상자(후순위), 가족 돌봄 청년 특례 지원 제공
- ⑤: 가족 돌봄 청년 해당사항 없음

⑤ (온라인 패널 조사)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일정 표본 식별조사 실시 및 식별된 대상자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 진행

3 [지원①]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기존 제도 연계

◇ 즉시 지원가능한 제도 우선 연계 조치, 민간 자원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원 확대

- ① (기존 제도 연계) 각 지역 전달체계 활용, 민간자원 등과의 연계, 의료사회복지사 통한 의료·복지 연계체계 정비 등 현 체계 내 지원
 - (통합적 지원) 각 지자체에서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 대상 면담과 필요 시 가정 방문을 거쳐 지원 가능한 급여·서비스 통합 제공
 - ※ 가족돌봄청년 대상 지자체 업무 매뉴얼 등 지침 작성, 단계별·대상별 효율적 지원
 - (학습 지원) ‘두드림학교-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

구 분	가족 돌봄 청년 가구에 통합적 지원 가능한 서비스 (예시)	
돌봄 부담 완화	전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등
	소득 기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생활도움 지원 등)
	위기	통합사례관리대상 의뢰,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긴급위기 가족지원 등
생계 부담 완화	경제	생계·교육·자활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기초연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고용	근로·자녀장려금,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용자사업
	긴급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위기 가족지원
	주거	주거급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집수리 사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장기전세주택 공급,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기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푸드마켓, 문화 바우처,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차상위 각종 감면, 민간 후원 연계
의료 부담 완화	전 대상	대사증후군 관리, 가사간병통합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치매조기검진, 노안 개안수술비 지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등
	소득 기준	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건강검진, 암검진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학습 지원	기타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대학생 튜터링 사업,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② (민간 자원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영케어러 등 사각지대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 등 민간 자원에 적극 연계하여 지원

4 [지원②]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신규 제도 발굴

◇ 가족 돌봄 청년의 행정부담, 돌봄부담, 생계부담 완화 대책을 발굴하고 검토하여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 실시

<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전담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안) >

○ 행정·법률 업무 등 지원	⇒	○ 마을변호사·행정사 가족돌봄청년 연계 시범사업 ○ 정보 탐색 위한 가족 돌봄 청년 홈페이지 구축 ○ 가족 돌봄 청년 온라인 상담 활성화
○ 돌봄 지원	⇒	○ 가사간병, 노인맞돌 가족돌봄청년 특례 시범사업
○ 생계 지원	⇒	○ 가족돌봄청년 개인의 생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

※ 현재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 등에서 **선도적인 지자체**(서울 서대문구)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 실시 후 성과 평가 후 확산 모델 마련

① (행정·법률 업무 등 지원) 마을 행정사·마을 변호사 연계, 돌봄 정보가 집적된 홈페이지 구축, 온라인 상담 활성화

- (행정사 등 연계) 마을행정사·변호사와 가족 돌봄 청년 연계하여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대행, 각종 행정·법률 업무 상담 등

< 가족 돌봄 청년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안) >

○ 가족돌봄청년 전담 마을 행정사·변호사* 제도 운영 시범사업 실시

* 가족 돌봄 청년 간담회 등에서 '어른 부재 +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 서류 작성, 행정 처리 등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 제시

- (지원 내용) 행정기관 서류 제출, 각종 행정 법률 업무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 및 필요시 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기관 연계까지 지원
- (지원 방식) 지역 행정사·변호사 등과 연계하여 가족 돌봄 청년 신청이 있는 경우 1:1 연결 지원, 행정사·변호사 등이 구청·동주민센터 등에 매주 방문하여 상담 진행 등



마을행정사 위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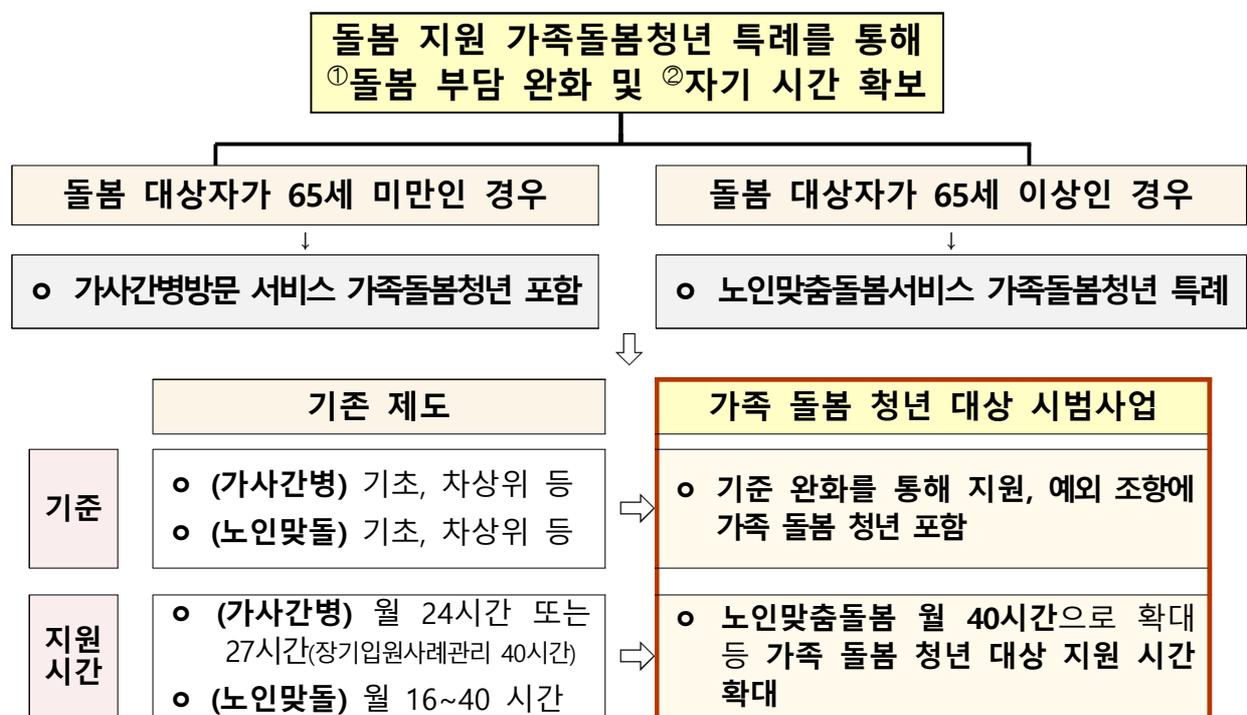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포스터

- (전담 홈페이지 구축) 가족 돌봄 청년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 (의료지원, 돌봄 지원, 병 간호, 생계 지원 등)를 범주화하여 제공
- * 가족 돌봄 청년들의 자조모임 역할도 가능하도록 사례 공유, 정보 교류, 격려 도모 등
- (온라인 상담) 기존 플랫폼 내 가족돌봄청년 전담 상담 창구 마련

명칭	운영기관	제공 서비스 및 내용
보건복지상담 129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복지사각지대, 보건의료, 인구아동, 노인장애, 위기대응 등 보건복지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온라인 청년센터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 전부처 청년 정책 정보제공 - 청년 이용공간 및 프로그램(개인맞춤형, 진로취업관련 등) 정보
청소년상담 1388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위기청소년 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 전화모바일사이버 및 청소년등반자(찾아가는 상담사) 오프라인 상담

② (돌봄 지원) 돌봄제공과 동시에 시간 확보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 등의 가족돌봄청년 대상 기준 완화, 지원시간 확대 시범사업

< 가족 돌봄 청년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안) >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체 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

③ (생계 지원) 학계·시민단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대상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해 필요도,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 검토

* 영국의 경우 영 케어러 보조금 지급 중이며(308.15파운드 (약 48만원일시불), 사용처 제한 없음) 호주의 경우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3,000 호주달러 (4회 분할 지급, 약 255만원)) 지원 중

5 (관리)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연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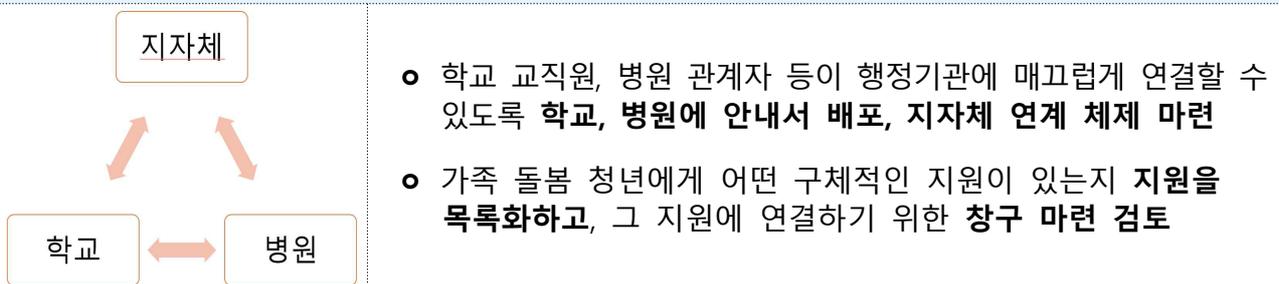
◇ 가족 돌봄 청년 발굴과 지원의 핵심 지점인 지자체-병원-학교의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① (가족돌봄청년 전담 관리) 발굴·지원을 위해 지자체-병원-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재학생 외 청소년에 대한 연계체제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 (통합상담-연계) ①가족돌봄청년 상담, ②정보제공, ③복지지원, ④전문기관연계로 이어지는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 지원

< 지자체-병원-학교 연계 체계 마련(안) >



< 병원 - 지자체 퇴원 연계 서비스 >



< 교육복지안전망 등을 통한 학교-지자체 발굴·지원관리(안) >

- ① 학교내 교육복지사 및 교육복지담당자 등에 가족돌봄청(소)년 관련 안내
 - ② 현황조사 연계, 상담활동 등을 통해 발굴된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해 지원 가능 유관기관 연계(지자체 협조)
 - ③ 발굴된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지원(상담, 복지, 정서지원 등)
- ※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의 학교장 추천 대상으로 가족돌봄청(소)년 포함 추진

② (아동 보호 조치) 아동 보호가 필요한 가족 돌봄 청소년 발견 시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등과 연계하여 최선의 보호 방안 모색

* 아동의 정신·신체 건강, 교육이 위협받을 때는 그 돌봄 역할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실시

6 [제도화] 가족돌봄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가족 돌봄 청년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 등 청년 대상 복지 정책의 기반 구축

① (가족돌봄청년 지원 특별법) “(가칭)가족돌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포함한 청년 공적 돌봄 제도화

* 기존에는 복지의 대상으로 청년이 인식되지 않았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청년 복지 대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가족 돌봄 청년, 사회적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 청년 1인 가구 등) → 가족 돌봄 청년을 포함한 청년 관련 지원법 제정 필요

- (정의) 가족 돌봄 청년 등에 대한 제도적 정의를 규정하여 대상자 설정
- (조사) 가족 돌봄 청년 등을 포함한 취약 청년의 양적·질적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규정 마련하여 정기적 조사 실시
- (지원)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기존 제도 특례 설정 및 별도 전담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관련 예산·조직·권한 규정 마련
- (국가·지자체 의무) 가족 돌봄 청년의 가족 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조항 마련

< 참고: 가족 돌봄 청년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법적 체계 >

연령(세)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청소년복지지원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기본법 (19세 이상 34세 이하)						

-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보호대상아동”으로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담·지도,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 제공 가능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특별지원 대상 위기청소년”으로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지원 제공 가능
- (청년기본법) 가족 돌봄 청년이 포함될 수 있는 별도 카테고리 부재

⇒ 각 법마다 ① 연령기준 상이, ② 대상선정 기준 상이, ③ 지원내용 상이, ④ 가족돌봄청년 지원 규정으로의 활용성 미흡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 필요**

7 (인식)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사회적 인지도 확산

◇ 청년 복지 제도가 청년에게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확산되도록 청년 복지 제도 홍보 강화

- ① (청년 특화 채널 이용 홍보) 취약청년(가족 돌봄 청년 등) 대상 지원 가능 제도 및 청년 대상 정책 소개 영상 다수 채널 게재
 - (인플루언서와 협업 홍보)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금융·복지 등)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여 청년구독자 많이 보유한 크리에이터와 협업

< 주요 소개 내용 예시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예시) >

단계	주요 문제점	대응 관련 검토(안)
제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공적급여 신청 및 도움 요청 없었음 ▷ 집주인, 의료인 등 이웃의 위기가구 발굴, 연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 강화 ▷ 주변 이웃의 신고 활성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확도 개선
돌봄 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및 간병 지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돌봄법 및 제도기반 마련 ▷ 긴급돌봄서비스,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청년 간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돌봄 청년 연구·대책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돌봄 청년 연구 추진 ▷ 청년 마음건강 지원정책 강화 ▷ 청년 대상 복지정책 홍보 강화

- ② (가족 돌봄 청년 등 심층 인터뷰) 가족 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험 공유 후에 정부 정책 방향 설명 등 추가

- (영상 기획 1안) “가족 돌봄 청년의 하루”

< (가제) “가족 돌봄 청년의 하루” >

- (형식) 가족 돌봄 청년의 하루 일상을 보여주는 Vlog 형식과 일상 속의 어려움을 조명·설명하는 인터뷰 형식의 내용 중간 삽입
- (내용 구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족 돌봄 청년의 하루 일상 조명

①가족 돌봄 청년 본인 소개 내용 → ②아침부터 돌봄의 시작 (식사준비, 청소, 간병) → ③생계비 마련을 위한 오전 근무 출근 (집을 비울 때 걱정되는 점, 집을 비웠을 때 일어난 사고 등 돌봄제공자로서의 애로사항의 내용 인터뷰 삽입) → ④오전 출근 길 등교 학생과 오버랩하여 본인의 학업 중단 관련 내용 인터뷰 삽입 → ⑤귀가 후 다시 돌봄의 시작 (귀가 후 어질러진 집 정리, 돌봄대상자 간병의 모습) → ⑥개인 학업 및 취업준비 모습 (진로·학업 병행 문제, 현실의 어려움 인터뷰 삽입) → ⑦저녁 식사 및 취침의 모습 (돌봄제공자로서의 애로, 정서·심리 측면의 어려움, 앞으로 가족 돌봄 청년으로서 “돌봄의 공적 사회화”를 위해 건의하고 싶은 내용 인터뷰)

▪ (영상 기획 2안) “가족 돌봄 청년과 청년정책 담당 청년사무관과의 대화”

< (가제) “청년이 청년에게” >

- (형식) 가족 돌봄 청년과 담당 사무관과의 대화 및 영상 코멘터리
- (내용 구성)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경험 인터뷰와 영상 코멘터리를 통한 어려움 공감, 가족 돌봄 청년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방향 전달

①인사 및 소개 → ②가족 돌봄 청년 본인의 어려움에 대한 (인터뷰)내용(진로·학업 병행 문제, 돌봄제공자로서 애로, 정서·심리 측면의 어려움 등) → ③영상 코멘터리 (1포 10kg 100개의 생애, 가족 돌봄 청년 관련 뉴스 혹은 다큐영상) → ④복지부 내부의 가족 돌봄 청년 관련 대책 진단 및 소개 → ⑤가족 돌봄 청년의 공적지원을 받았던 경험 및 정책 건의 사항 등 → ⑥해당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및 앞으로의 다짐 → ⑦가족 돌봄 청년의 본인과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전달

③ (다양한 매체 이용 홍보) 복지부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한 가족 돌봄 청년 대책 및 청년 정책에 대한 소개 및 홍보

- (“직알”) 복지부 유튜브 채널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를 통한 가족 돌봄 청년 정책 홍보
- (스토리툰) 가족돌봄청년 돌봄 어려움의 내용을 담은 스토리툰 게재



④ (가족 돌봄 청년 포럼) 가족돌봄청년, 의료사회복지사, 교사,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포럼 개최하여 사례 공유 및 방향 논의

- (의견수렴) 가족 돌봄 청년 관련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가족 돌봄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 지속
- (인식개선) 가족돌봄청년 사례 등 긍정적 경험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 전국의 가족 돌봄 청년에게 용기 전하는 계기로도 활용
- (사회적논의) 학계·시민단체 등에서 논의 중인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제도에 대해 필요도,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해 검토

V

향후 계획 및 행정 사항

□ 향후 추진 계획

◇ 국조실 중심의 관계부처 TF를 구성(2월중)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 (현황 조사) 중·고생 현황조사*, 청년 대상 설문 조사('22.3~4.) → 조사 통계 취합 및 발굴 명단 작성('22.4.) → 지원·연계('22.5~)
- * 3월 셋째 주 공문 안내(3월 넷째 주 조사 시행), 4월초 조사통계 취합, 4월말 통계작성 완료 목표
- (행정 조사) 사회보장정보원, 건보공단 등 연계하여 규모 파악 진행('22.2~) → 집단 인터뷰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욕구 조사 진행('22.2~) → 규모·욕구 파악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도출('22.5.)
- (관계부처TF)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 TF 주요 논의 내용(안) >

- ▶ (제도적 정의 구체화)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족돌봄청년의 제도적 정의 마련('22.2.~)
- ▶ (시범사업 진행) 선도 지자체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 지원(행정·법률 업무 지원, 돌봄 지원 등) 시범사업('22.5~)
- ▶ (법 체계 논의) 가족돌봄청년 정의 및 기준, 국가·지자체 의무, 지원 체계 구축,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법 체계 논의 착수('22.3~)
- ▶ (전담 발굴·지원·관리 체계 마련) 전문가 논의 및 지원방안 관련 연구 착수('22.2.~),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관리 체계 마련('22.상)
- ▶ (홍보 추진) 청년 특화 채널 이용하여 가족돌봄청년 대상 복지 제도 소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제고, 심층 인터뷰 배포 등('22.2.~)

□ 행정 고려 사항

- (법) 가족돌봄청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제화를 위한 논의('22.2~)
- (예산) 가족돌봄청년 정기 실태 조사, 지원 제도 신규 개발, 추가 시범 사업 등을 위한 '23년 추가 예산확보 논의('22상)

* '22년도 사업집행비는 기획조정실 포괄적 정책연구(정책연구개발R&D) 등 예산 활용

< 영국·호주·일본 가족 돌봄 청년 관련 사업 사례 비교 >

내용	영국	호주	일본														
정의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친척을 돌보는 18세 이하	장애, 신체·정신질환, 약물 등 문제의 가족친척지인을 돌보는 25세 이하	고령,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친족·친구·지인에게 무상으로 간병 등을 제공하는 18세 미만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 내 영 케어러 정의·권리·지원·발굴 방안 등 규정	「 케어러 인정법 」 내 영 케어러 권리·지원 방안 등 규정	「 케어러 지원 조례 」(사이타마현) 내 가족 돌봄 청년 정의·권리·지원 방안 등 규정														
실태 조사	인구 총조사 일반 진료 환자 설문 조사	사회서비스부 영 케어러 학비 보조금 조사	취업구조기본조사, 영 케어러 전국실태조사 *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생 10% 무작위 추출														
돌봄 대상자 요건	각종 복지급여* 중 한 가지 이상 수령 가족·친지 * 장애인 개인자립수당, 장애생활수당, 장애노인 보호수당, 상이군인자립수당, 일상간호지원 및 산업재해장애급여 등	신청 과정상 돌봄 대상자 요건 없으나, 선정 절차에서 가중치* 부여 * 돌봄대상자의 장애 정도, 돌봄 부담, 돌봄 기간, 가구 소득, 주 돌봄자, 장애 유무, 한부모 가정 등	-														
가족 돌봄 청년 수당	영 케어러 보조금 - 308.15파운드 (약 48만원일시불) - 사용처 제한 없음 * '21.3월 기준으로 29백명 청소년들에게 지급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 고등학교 이상 과정 수학하며, 다른 장학금 받지않는 영 케어러 - 3,000 호주달러 (4회 분할 지급, 약 255만원)	-														
수당 효과	영 케어러들은 자신만을 위해 쓸 용돈 없는 경우 많아 보조금으로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으로 조사* * '21.6월, 스코틀랜드 UWS	파트타임 하던 영 케어러 중 55%는 보조금 수령 이후 파트타임 그만두거나 시간 줄일 수 있다고 응답 ('17. 호주 사회서비스부) 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 <table border="1"> <caption>영 케어러 학비보조금 이후 학업 성취도 변화</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성취도 변화가 거의 없음</th> <th>모름</th> <th>성취도가 크게 향상됨</th> <th>향상됨</th> </tr> </thead> <tbody> <tr> <td>2015</td> <td>11%</td> <td>12%</td> <td>9%</td> <td>67%</td> </tr> <tr> <td>2016</td> <td>10%</td> <td>27%</td> <td>11%</td> <td>53%</td> </tr> </tbody> </table>	연도	성취도 변화가 거의 없음	모름	성취도가 크게 향상됨	향상됨	2015	11%	12%	9%	67%	2016	10%	27%	11%	53%
연도	성취도 변화가 거의 없음	모름	성취도가 크게 향상됨	향상됨													
2015	11%	12%	9%	67%													
2016	10%	27%	11%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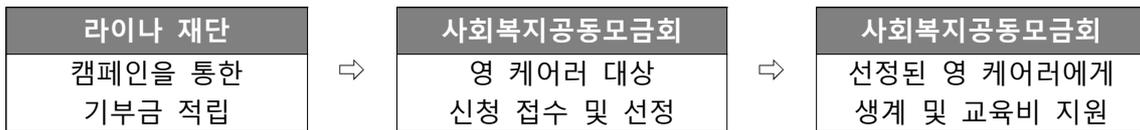
붙임2

가족돌봄청년 대상 민간 지원 사업

- (민간자원 연계) 영 케어러 대상 생계·교육비 및 돌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찾아서 지속 연계
 - (민간자원 공동모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한 생계·교육비 지원

< 참고① : 라이나전성기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케어러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영 케어러들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2021. 1월 ~ 2022. 12월
- (사업예산) 라이나 재단에서 캠페인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 약 1억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
 -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 조부모를 부양하는 자
- (지원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선정된 영 케어러 30명에게 생계 및 교육비로 매월 30만원 씩 12개월 간 지원(1인당 360만원)



< 참고② : 영케어러 등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 돌봄 사업 계획 중 >

- (사업목적) 청소년·청년 등 새로운 사각지대 돌봄 가족 발굴 및 지원,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
- (사업내용)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 돌봄가족의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 사각지대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붙임3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개요

□ 사업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및 일자리 창출('04~)

□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첨부),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법정 보호 세대)의 자녀·손자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서비스 내용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기간)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시·군·구의 재관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연장 불가)
-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건강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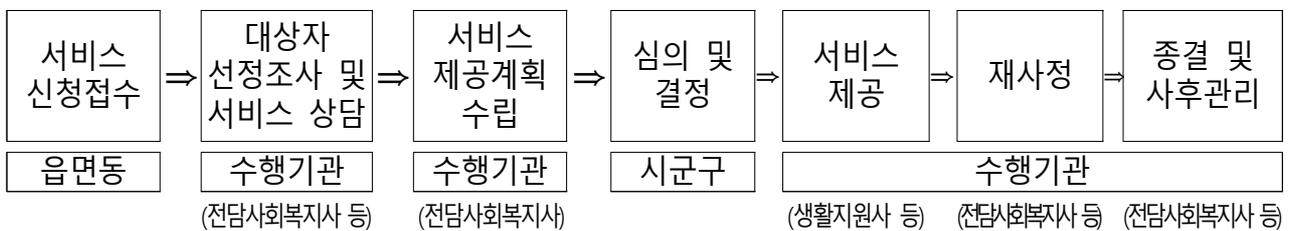
[’22년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51,94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95,93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 대상자 선정도구: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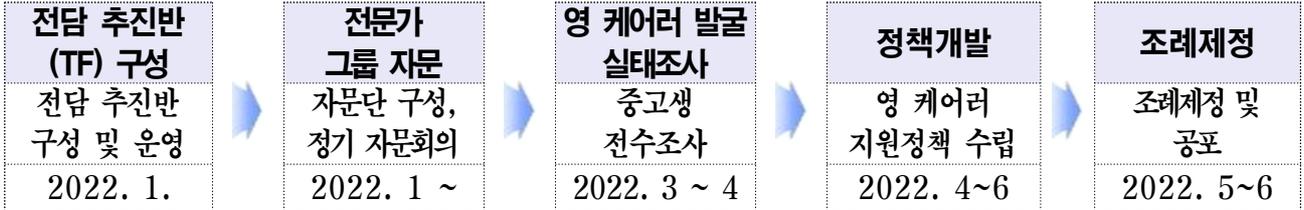
□ **서비스 제공체계**

- (수행기관) 시·군·구에서 지역 내 노인인구, 접근성 등을 고려, 권역을 설정하여 수행기관 선정·위탁(646개소)
- (수행인력) 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채용
 - (전담사회복지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활지원사업무 지도·관리, 자원 발굴·연계 등(일 8시간 근무, 0.2만명)
 - (생활지원사) 직접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등(일 5시간 근무, 3.1만명)

□ **예산 : 4,366억원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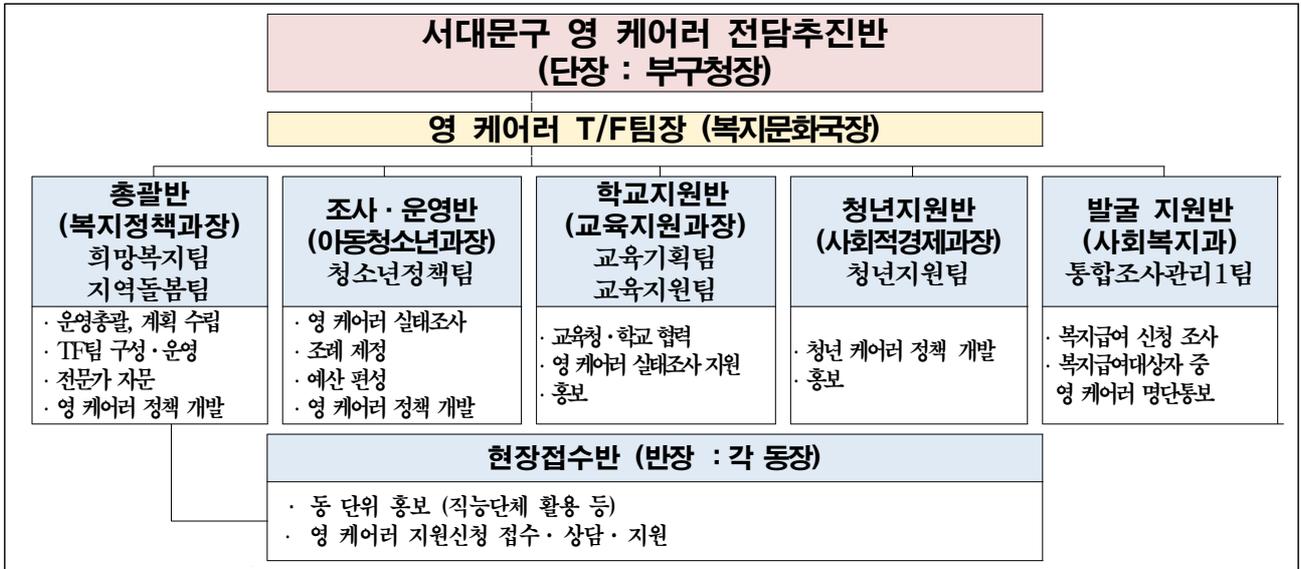
■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22년 1월 ~ 계속
- 주요추진사항



■ 추진 사항

- **관내 학교 대상 홍보 및 발굴 요청 (서울시 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협의)**
 - 교육청·교육지원과 협조로 관내 초중고 40개소에 영 케어러 발굴 관련 공문 발송
 - 영 케어러의 상황 및 현황을 가장 잘 아는 학교 교사 중심 신고 요청(천사특 등)
- **영 케어러 발굴 및 상담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상담매뉴얼」 제작·배포(74종)**
 - 각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및 돌봄 매니저, 복지상담 전문관 대상으로 배포
 - 대상자(간병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상담 매뉴얼을 활용하여 적정 복지제도 연계
 - ※ 단계별(재산소득 기준별 지원) 및 부문별(경제, 고용, 의료, 주거, 돌봄 등) 상담 길라잡이
- **병원-복지 서비스 원스톱 돌봄지원 체계 강화 및 확대**
 - 종합병원(세브란스병원, 동신병원, 강북삼성병원, 적십자병원, 세란병원) 5개소 협약
 - 병원(가좌연세병원, 대성병원, 동서병원, 동서한방병원) 4개소, 요양병원(강북연세요양병원, 사랑요양병원, 효담요양병원) 3개소와 추가 협약 진행
 - 퇴원환자 연계사업 운영 및 긴급 위기대상 돌봄SOS 선지원
- **영 케어러 정책 추진을 위한 TF 및 전문가 그룹 자문단 구성**
 - 운영총괄, 기획, 조사, 조례제정, 지원 등 영 케어러 전담 추진반 구성·운영
 - 정책 적절성, 추진 전략·단계별 세부 이행계획 점검, 문제 대응 등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추진 계획

○ 영 케어러 사업 홍보 (서대문구 자체 영상 제작 검토)

- 학교, 영 케어러 당사자, 주민, 관련기관·단체 등영상, 리플렛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 활용
- * ▲ 실태조사에 따른 사전교육 자료, ▲ 영 케어러의 정의·인식 개선, ▲ 영 케어러 당사자를 위한 지원 안내, ▲ 지역 내 영 케어러 발굴(신고) 방법 홍보 등



○ 영 케어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서대문구 자체조사 검토)

- 관내 중, 고등학교 21개소 11,317명
- 서부교육지원청 협조 후 중·고등학교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영 케어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한 교사의 신고(서대문구 천사톡 활용) 동시 접수

○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 돌봄SOS센터 등 기존 복지제도에 영 케어러 지원을 위한 정책 보완
- 발굴된 영 케어러 맞춤형 복지정책 신설

○ 영 케어러 지원 조례 제정

- 22. 4 ~ 6월 중 제정
- 영 케어러의 정의, 자치단체의 책무, 사유 지원내용 방법 등 내용 포함